

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10월 3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시설로 아동복지 서비스 개선 및 현행법령을 준수하고자 시설 분리하여 초록꿈터(남아 양육시설) 위탁을 위해,

나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꿈나무마을 초록꿈터(남자아동 양육시설) 운영·관리
- 위탁기간 : 4년 (2016.1.1. ~ 2019.12.31) 예정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수의계약
- 소요예산(안) : 5,159백만원 내외(연간 시비 100%)

나. 대상기관 : 1개소

시설명	위치	시설규모	주요공간
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	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-11외(응암동 42-5외)	- 대지 43,203.00㎡, - 건물면적 15,692.47㎡, - 지하1층/지상6층	○ 초록꿈터(남자아동 양육) - 생활실, 세탁실, 조리실, 강당, 도티기념병원 및 기숙사, 펌프실, 수위실 등

다. 주요 위탁사무

- 보호대상 3세 이상 남자아동의 보호·양육·치료
- 보호대상 3세 이상 남자아동의 일시보호 및 보호자에게 인도
-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시설의 설치) 제5항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제2항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수탁자 선정)
- 가족담당관-11755(2015.6.29. 시립 꿈나무마을 시설 분리 계획)

나. 예산조치 : 약 5,159천원 (연간 시비 100%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김경래(☎2133-5181)